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7 | 2024.01.08. (2024.01.02~01.07)**I. 정부 주요 정책 동향****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02~01.07)

【정부의 주요 정책】

윤석열정부는 국민과 소통 강화 차원에서 2024년도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지난 1월 4일 첫 번째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24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23년 1.4%)로 전망하였으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제약되고, 건설부문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율은 인구 증가세 동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그리고 물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상당폭 둔화될 전망이나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반등의 근거로 세계 교역 회복을 꼽고 있는바,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튼 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가 예상되나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전년(310억불)보다 흑자폭이 대폭 확대되어 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빠짐없이 기재, ②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공개, ③ 확률정보 등은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 ④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로 법 위반 사례 철저히 단속, ⑤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 준수하도록 관리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는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입니다.

(가칭)“서민금융 잇다”로 명명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수요자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받고 조회하여, 상품 간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대면에 한정되었던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편리하게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 ②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 ③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입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지난 한 주 동안 발의된 주요 입법안으로는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6인)」,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등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제411회임시회는 1/9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부의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법사위 법안제1소위에서는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8(월) 10시에 기재위에서는 기획재정부 현안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1/8(월) 10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1/11(목) 10시)에 대해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기획재정부) 6
-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024-2028)」 확정 1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문화체육관광부) 19
-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농림축산식품부) 20
-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위원회) 22
-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칭)」 출시 발표(금융위원회) 2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획재정부) 26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농림축산식품부) 26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7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7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공정거래위원회) 28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28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2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0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0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3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 등 12인) 3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33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6인) 33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2인) 3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1.02~01.07) [바로가기](#)

-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국제조세 분야)
-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기업과세 분야)
-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자산과세 분야)
- [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 [노동]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4-01-04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통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함

각 부문별로 전년도 대비 2024년도 전망으로는

(성장) 세계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 확대(1.4→2.2%) 전망

- 세계교역 및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강화 예상
 - '23→'24년 세계경제 전망(% , IMF<'23.10월>) : (성장) 3.0 → 2.9 (교역) 0.9 → 3.5
 - '23→'24년 반도체 매출전망(% , WSTS<'23.11월>) : (전체) △9.4→13.1 (메모리) △31.0→44.9

(고용) 취업자수는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대면 서비스업 일자리가 정상화되면서 23만명 수준 증가 전망

- 고용률의 경우 인구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지속 전망

(물가)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작년(3.6%)보다 상당폭 둔화 (2.6%)될 전망이나,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전망

(경상수지) 전년(310억불)보다 흑자폭 대폭 확대(500억불) 전망

-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폭이 큰 폭 확대되는 가운데, 서비스수지의 경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적자 예상

* '23→'24년 수지 전망(억불) : (상품수지) 310 → 550 (서비스·소득수지) 0 → △50

	2023년	2024년
■ 경제성장률(%)	1.4	2.2
■ 취업자증감(만명)	32	23
- 고용률(% , 15세 이상)	62.6	62.8
■ 소비자물가(%)	3.6	2.6
■ 경상수지(억불)	310	500
- 통관수출(%)	△7.4	8.5
- 통관수입(%)	△12.1	4.0

주요 내용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 물가·서민생활 안정

① 상반기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 지속

- (수급 안정)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30만톤 신속 도입(1,351억원 관세)
- (경쟁촉진) 공정위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밀접품목 관련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24.上)하고, 부문별 경쟁 제한요소 개선 지속
- (정보제공) 주요 생필품 용량 등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화('24.2/4)
* 공정위 고시('24.1/4) 및 식약처·환경부·산업부 고시('24.2/4) 개정
- (제도 개선) 주파수 경매 등 5G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신속 추진, 중소알뜰폰 전파사용료 일부 감면을 '26년까지 연장(당초 ~'24년)

②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노력 강화

- (교육) '24.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年 350→400만원)
- (의료)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급여제한을 면제해주는 소득·재산기준 대 폭 완화
- (금융)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금융·상담서비스 등 지원 강화
- (납세)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 반영,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급여채권 금액(現 185만원) 등 인상

③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다세대·다가구 지원)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
 -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24년 중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된 11.5만호 이상 공급
- (전세사기 사각지대 축소)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참여 금융기관을 소금융권으로 확대
- (주택유형 다양화)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분양가·임대료 인하 유도
- (전세대출) 청년·출산가구 대상 버팀목 등 전세대출 지원 확대
- (정책모기지) 디딤돌대출·보증자리론을 예년 수준 공급하여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장기·저리 부담대 집중 지원

□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①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에너지) 1/4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3천만원 이하)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
- (고금리) 상생금융·재정지원 등 통해 2.3조원+α 규모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리 대환 프로그램(최대 9조원)

- (세부담) 최근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現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 (전통시장 세제지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40→80%, '24.上)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 신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가맹점 +5만개)하고, 발행량도 전년대비 1조원 확대(4→5조원)
- (재기지원)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로 '23.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24.1/4)'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②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중장년 일자리 지원 강화

- (노인)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88.3→103만명, +14.7만명)하고, 수당도 '18년 이후 6년만에 인상(+2~4만원, +7%)
-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1:1 돌봄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장애인 지원 예산 대폭 확대(5.8→6.4조원, +9.4%)
- (중장년) 고용안정 및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 강화 등 '중장년 전직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24.上)

□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①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 회복 지원

- '24년 카드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도입(별도 한도 100만원)
 -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
- 노후차교체·고효율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 추진
 - (노후차교체)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여 '24년에도 지원
 - (전기승용차) 업계 가격인하에 비례하여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 (고효율기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닫기 등 보급 규모 확대

② 국내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 내·외국인 정책지원 강화

- 여행가는 달 연 2회(2·6월) 확대 시행, 지역축제 조기 개최 유도 등을 통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 조성·확산
- 숙박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한정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중 국내 관광상품 발굴 확대
-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 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비자제도 개선) 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24.12월)
- (편의 제고)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 (의료관광)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외국인 회복 추세를 감안하여,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24년 수출 7천억불 및 해외수주 570억불 달성 뒷받침

- (인센티브)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23년 345조원)하고, 2조원 규모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애로해소)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 지를 1년 연장(~'24년)

- (다변화)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확대
-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 검토 등 해외수주 전폭 지원
- (인프라) '27년 4대 강국 도약 목표로 해외건설 400억불 수주 달성 지원을 위한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 수립·추진
- (방산)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여 수주확대를 뒷받침하고, 권역별 거점국 설정 및 진출전략 차별화
- (원전)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 위한 新프로젝트 발굴

④ 투자 조기 반등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 (세제지원) 시설·R&D 투자 촉진 위해 세제 인센티브 강화
 -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24.12월)
 - 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시 상향(최초 시행)
- (금융지원) 역대 최대인 52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23년 50조원)
- (애로해소)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TF」 중심으로 지체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속 발굴, 신속 가동 지원

⑤ 역대 최대 외투 유치(350억불)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원체계) 외투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Invest Korea 역량강화,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 강화
-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 확대(500→2,000억원)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 상향(최대 40→50%)
-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570→1,000억원)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① [거점지역]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 본격 조성

- (초광역권 특화발전) 4+3* '초광역권 발전계획('23.10)'을 바탕으로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24.3)
 - *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
- (권역별 거점 육성)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위한 신규 특구 본격 조성
 - (기획발전특구)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24.上) 및 지자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획발전 특구 특례' 도입 추진
 - (교육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23.12월 공모) 지정·운영('24년~)
 - (도심융합특구) 5대 광역시 선도사업 추진(기본·실시계획 승인, '24.下)으로 일터(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주거·여가시설 등 복합 개발
 - (문화특구)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총 13곳*)는 1년간 예비사업 추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24년말 최종 지정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 육성 위해 금년중 특구 3곳 추가 지정(現 4곳*), 첨단분야 규제혁신 지속
- (특구 효율화) 부처별로 운영중인 특구제도 전반의 기능 점검 등을 거쳐('24.上 연구용역) 「특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24.下)

②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중 프로젝트」 추진

-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 (관광기반 확충) 미니 관광단지 신설(기존 50만㎡ 이상→신설 5~30만㎡),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 (금융)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는 융자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지방 우선배정(60%이상 목표) 추진
 - (세제) '25년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
 -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투자 지원을 지속하고, 지자체간 경쟁·협업 촉진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24. 上)
- 정주민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23년 28개 지자체,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공개 모집 중) 및 쿼터(現 1,500명) 확대 추진
 - (농·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24. 上)
 - (의료) 의대 입학정원 확대('25년~)와 연계하여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 마련('24. 上)

③ (건설투자)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중앙) SOC 사업(25.0→2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추진
- (지방)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신속집행(60%) 추진
- (공공투자) '24년 60조원대 규모의 투자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55%) 달성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 추진
- (민자사업) 민간 참여유인 제고* 등을 통해 '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대비 상향(13 → 13.7+α조원)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24.1월부터 펀드*를 운용하고 각 지자체의 시장성·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추진
- (한시적 규제유예)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8년 만에 재도입(과거 '09년, '16년 2차례 시행)
- (권한이양) 제1차 이양 과제(57개)를 신속 추진·완료('24 上)하고, 제2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과제 추가 발굴
- (부담완화) 준공후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 등 관련 건설사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규정정비·공기업역할 강화 등 방안 강구
- (공공부문 공급 가속화)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주택도시공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택지사업 가속화
- (민간 애로해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사비 분쟁 완화, 공급 규제 완화 등 민간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 구축

【잠재위험 관리】

□ 부동산 PF 연착륙

- (유동성 공급)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확대

- (PF사업장 정상화) PF 사업장별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부실우려 및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제도 개선) 부동산 PF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 (부동산시장 정상화) '24년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조치(시행령 개정 등)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개정안 주요 내용	후속조치·시행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재초한 분담비율(10~70%) 구간 확대 ◆장기 거주자 부담금 특	◆'24.3월 시행 예정 (장기거주 특례 세부사항 마련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 부여	◆'24.4월 시행 예정

□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 (양적 관리)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추진
 - * 가계부채/GDP 비율(% , BIS) : ('17) 89.4 → ('21) 105.4 ('22) 104.5 ('23.2/4) 101.7
- (질적 개선)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

□ 공급망 안정 확보

- (대응체계) 공급망위원회(정책 심의·조정) 신설, 신속대응반(한국형 Strike Force) 운영, 기금 신설 등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
- (공급망 다변화) 금융·세제·재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 (자원 안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비축방식 다양화

□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① 부문별 수급여건 개선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 (자금·채권시장) 금융회사 규제 완화조치를 연장(~'24.上)하고, 채권 수급 개선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 추진
- (주식·외환시장)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본격 시행

② 시중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 (은행) 자본버퍼 확대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적립('24.5월~, 1%)하도록 하고, 스트레스완충 자본 제도와 추진
- (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시행('24.下)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조합의 손실부담능력 제고
-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위해 불법추심이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 대상 확대

③ 한계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 (부실방지) 취약업종 및 장기존속 한계기업 대상 신용위험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 우려기업 선제적 관리

- (사업재편) 기업활력법상 인센티브(동반성장종합평가시 상생형 사업 재편 기업 가점 부여 등) 도입으로 자발적인 상생형 사업재편 촉진
- (회생지원) 취약·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신속화 및 개선

【역동경제 구현】

□ 혁신 생태계 강화

①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

- (입지규제)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 (개발제한구역) 지역(비수도권 한정)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 (농지)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 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안전한 농지이용 합리화 추진
 - (산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되, 국민편익·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청과 논의하여 산지이용 확대
- (킬러규제) 「킬러규제 혁파 TF」 등을 통해 10대 분야 중심으로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분야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24.1/4) 추진

② 첨단산업 클러스터, High5+ 등 중심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클러스터 신속 조성)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High5+ 집중 육성)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을 가속화하고,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 기반 확충
- (제도개선) 첨단산업 기술보호 위해 해외인수·합병심사 강화, 기술유출 범죄 특성을 반영하여 양형기준 상향 조정('24.1/4)

③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

- (출연연 혁신)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하여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글로벌 R&D 확대)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대폭 확대(0.5→1.8조원)하여 젊은 과학자의 연구 기회 증대 및 역량 강화
- (민간투자 촉진)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 (체계혁신)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평가 등 개편

④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24.下)하고, 중소기업 성장 쉼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 수립
- (중소→중견 성장)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 (글로벌 진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중진공), 글로벌파트너링센터(KOTRA) 등 확충
- (지원 효율화) 재정·금융 등 정부지원대상 선정시 민간의 선별역량 활용, 성장성·지원사업 효과성 등의 체계적 분석 시스템 마련

- (벤처기업 로드맵 마련) 벤처기업법 상시화('24.7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24.7월)
- (투자촉진)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및 벤처투자 유인 강화
- (애로해소) 재창업자 신용회복 지원 확대* 및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 등 벤처·창업기업 경영여건 개선 지원
- (M&A 활성화)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통한 M&A 활성화 유도

⑤ 유망·성장업종 및 청년 친화 분야 등 서비스업 집중 육성

- (기반조성) 수요기반 확대, 전문인력 확보, 지원체계 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보강
- (산업육성) 서비스 TF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24.上)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지원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추진

□ 공정한 기회 보장

① 진입장벽 등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역동성 제고

-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 조사 및 개선 추진
- 금융권 경쟁촉진 위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운영, 은행 경영현황 공개 등 추진
- 영업장 운영시간, 최소면적 등 일부 자영업 운영시 적용되는 과도한 영업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영업 기회 제공
- 디지털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창업·투자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②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 행위 방지

- (플랫폼) 플랫폼 - 입점업체·소비자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 방지
- (프랜차이즈) 계약서 의무기재사항에 가맹 필수품목을 추가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 변경 시 협의절차 의무화
- (금융)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단속, 처벌 및 범죄이익 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쉰 단계에 걸친 범정부 대응 강화

③ 노동시장 선진화로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체계 설계

-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24.上)
-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다양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점검·권리구제 지원
- (근로시간) 대국민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 마련('24.上)
- (노사법치) 불법 노조전임자 운영 등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지속 추진

④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 (상생협력)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 위해 연동확산지원본부 등을 중심으로 약정체결 관련 교육·컨설팅, 원가분석 등 지원
- (ESG 확산) 글로벌 정합성 및 국내기업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기준 마련('24.1/4, 초안 발표)

□ 사회 이동성 제고

①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채용박람회(1월)」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3년 수준(2.2만명) 이상 확대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위해 「(가칭)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24.下)

② 저소득층 등에 대한 양질의 교육기회 보장

- 영재교육·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교육사다리 확충

③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재기지원 강화

- (고용안전망)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
-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연계 복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근로의욕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근로장려금(EITC) 개선 검토

【미래세대 동행】

□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25년 이후 예산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 차단
- 국가·지자체 중복지급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②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
- (건강보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추진

□ 인구·기후 위기 대응

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 전면 개편

- (유입)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10만명 수준 대폭 확대('23년 17.2만명 '24년+α)
- (취업) 중진공·산단공 취업·인턴설명회 개최, 구인구직정보 제공 개선(Study in Korea 사이트) 등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 확대
- (정주) 비전문인력(E-9) 장기근속특례 도입방안('24.上), 숙련기능 인력(E-7-4) 장기근속 유도방안 등 마련, 안정적 생활 지원

②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정책지원) 기존 사업의 실증분석 토대로 예산·세제 우선순위 재조정 통해 범부처 협업하 마련중인 저출산 대책 적극 뒷받침
- (부담경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확대 등 혼인·출산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확대
- (육아휴직)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휴직급여 지급기간 연장(12→18개월), 맞돌봄 특례기간·급여상한 확대

* (現) 3개월 최대 300만원 → (改) 6개월 최대 450만원

③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실버타운)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4.上)
- (퇴직연금)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단계별(가입·운용·수령) 제도 개선방안 마련

④ 무탄소 에너지 확산, 저탄소 전환 가속화 등 통해 탄소중립 이행

- (CFE 이니셔티브) '가칭CF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
- (에너지계획)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년)」 수립('24.上)
- (수요확대) REC 가중치 정기개편('24.下) 및 중대형 태양광·풍력 확대,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애로 해소
- (에너지믹스) '24년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하는 등 원전·해상풍력·태양광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 (수송)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24.1월)하고,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하여 성능 개선·기술혁신 유도
 - 충전기 보급('24년 6만기),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
- (건물)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마련('24년)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
- (산업)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CCUS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 추진

⑤ 녹색금융·배출권제 등 기후대응 관련 지원 인프라 고도화

- (녹색금융)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융자·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 강화
- (배출권제) 유상할당·BM할당 확대, 배출권 과다할당 방지 등 NDC를 감안한 「제4차 기본계획('26~'35년)」을 '24년 내 수립
- (기후기금)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탄소감축 효과가 큰 장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 개편

□ 미래세대 기회 확대

① 청년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 확대

-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
-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4.9→7.5만명)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요건 완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취업 인센티브(50만원) 신설 등 통해 청년 근로유인 제고
-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정보·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 도입 및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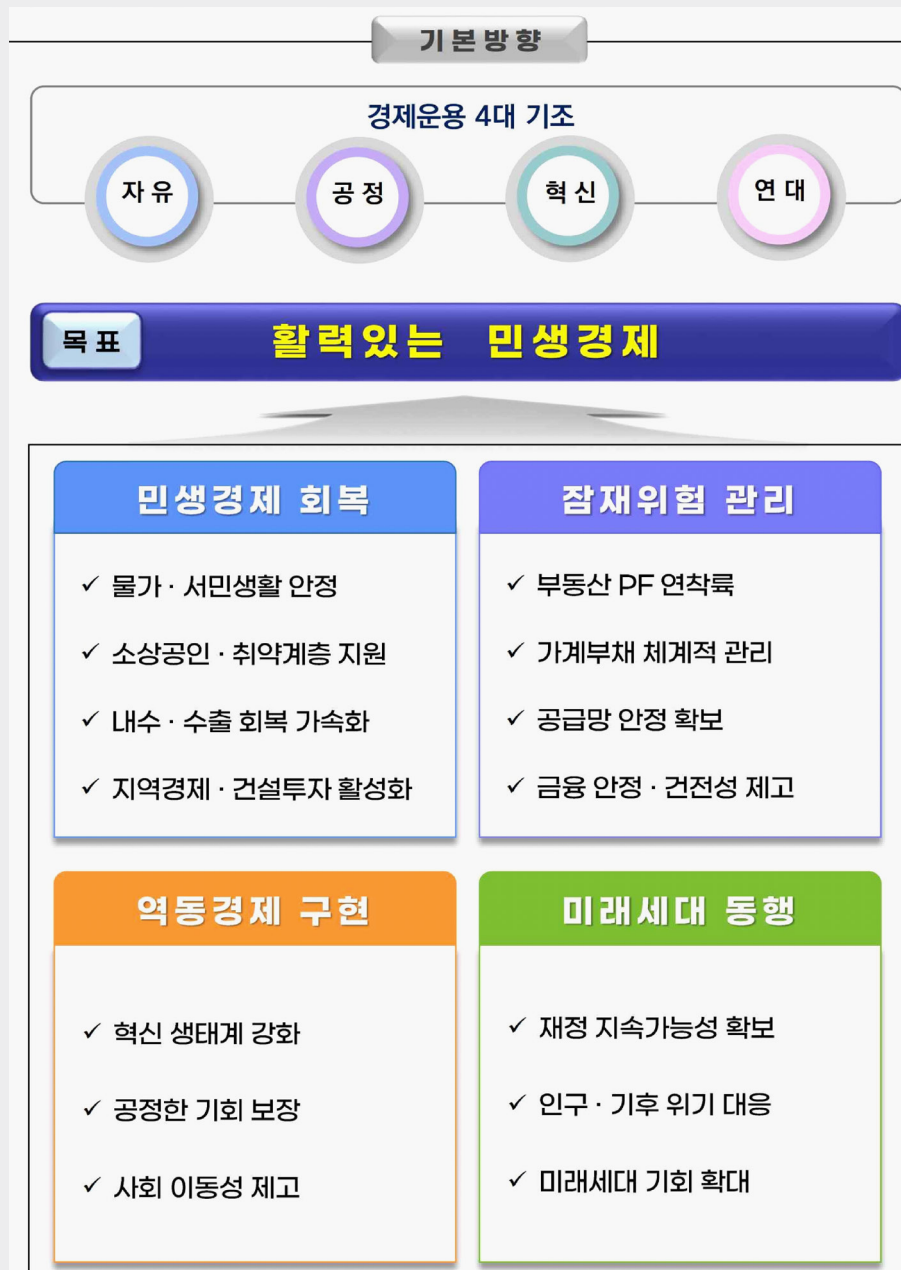
② 청년 전용 금융상품 지원 확대 등 통해 자산형성 뒷받침

-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도입으로 우대금리·저리대출 등 지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허용을 통해 상품간 연계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 장병내일준비저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잔여복무기간 6→1개월)하여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기초수급아동의 조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 확대(12~17세 생계·의료급여자 17세 이하 쉰 기초생활수급자)

③ 도움이 시급한 취약 청년의 자립과 안정 지원 강화

- (가족돌봄지원) 가족부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年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밀착 지원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지원) 자립수당 인상(月40→50만원), 전담인력 확충, 민간 협력 멘토링·직무교육·취업연계 등 청년의 자립지원 강화
- (마음건강지원) 청년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청년마음건강센터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
-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공동 생활지원(소통훈련, 생활관리 등), 가족간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사회복귀 유도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최상위 지진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진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5개년 단위로 수립·추진하고 있음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집중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하여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 계획임

* 목표 내진율(%):('23) 76.5 → ('25) 80.8 → ('28) 87 → ('35) 100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하며, 이중 특히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하기로 함

* 소방관서·경찰관서: '30년까지('35 → '30) / 지자체 청사 '25년까지('30 → '25)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자발적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키로 함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하여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 (현재) 1층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m² 이상 건축물 등) → (추가) 30년 경과 2·3층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

** (현재) 진도-최대지반가속도 → (변경) 내진 특·Ⅰ·Ⅱ 등급으로 표기

아울러 정부는 민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건축물 내진보강시 용적율·건폐율* 상향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하며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426개, '24~'27)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키로 하며,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임

참고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24~'28)

□ 추진방향

비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 대한민국
목표	참여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비로 지진위험 경감체계 확립
전략	◇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과학기반 예방정책 추진으로 현장 적응성 확대 ◇ 지진방재 중단계에 중장기 계속과제 보완

추진 분야		주요 추진 과제
1	주요 공공시설물 집중 내진보강 추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단계별 신속 추진 ▶ 국민생활 기반시설 및 단층 주변 우선 내진성능 확보
2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 및 민간협력
3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 실전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지진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및 기술개발 추진
4	피해경감 지진관측·예측 시행	▶ 고밀도 국가 지진관측망 확충 ▶ 지진경보체계 및 전파체계 고도화 및 단축
5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 부처별 단층조사 결과 공동 검증 및 조사성과 공유 ▶ 단층의 지진재해 평가기법 개발

□ 달라진 종합계획 주요 지표

분야(지표)		현행	변경
주요 공공시설물 집중 내진보강 추진	소방·경찰관서	• 2035년	• 2030년(5년 단축)
	지자체 청사	• 2030년	• 2025년(5년 단축)
	국가기반 핵심시설	-	• 2025년
	학교시설	-	• 2029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 활성화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확대	• 1종 시설물(「시설물안전법」)	• 1종 시설물+2,3종 시설물(30년 경과)까지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 확대	• 안전등급, 제원, 중대결함 등	• 시설물 내진성능 정보 확대(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내진보강권고 정보)
	내진능력 공개방안 개선	• 내진능력에 '진도-최대지반가속도'로 표기	• 내진등급(특·Ⅰ·Ⅱ)으로 명확화하여 내진능력 공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진대비 역량 강화	지진훈련	• 관계기관 훈련	• 국민참여형 지진대피훈련
	지진대응정보 시스템	• 계측관리 프로그램 이용시설(300여개, 윈도우 OS)	• 계측관리 프로그램 이용시설 확대(840여개, 윈도우/리눅스 OS)
	대피장소	• 수기로 관리	• NDMS를 통한 전산관리
피해경감 지진관측 및 예측 시행	지진경보체계	• 지진조기경보(5~10초 수준)	• 지진조기경보(5~10초 수준)와 지진현장경보(3~5초 수준) 병합
	지진탐지 소요시간	• 2.4초(집중감시구역) 및 3.2초(일반감시구역) 이내	• 1.4초(집중감시구역) 및 2.7초(일반감시구역) 이내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	단층조사	• 조사지역 중복 방지 위주의 소극적 협업	• '단층검토위원회'를 통해 부처 공동 검증 등 적극적 협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빠짐없이 규정

-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
-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차*,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
- 아울러 새로운 확률형 아이템 유형이 등장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고시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게임이용자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받을 수 있고, 게임이용자들의 권리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②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공개 대상

-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되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등급분류 예외게임물(교육, 학습, 종교 등의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등),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모두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 이는 게임시간선택제 예외 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를 대폭 축소 한 것으로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안에 반영

③ 확률정보 등은 게임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

-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확률 정보 등은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급확률은 기본적으로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

④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설치로 법 위반 사례 철저히 단속,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 준수하도록 관리

-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임
-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와 협업체 표시의무 위반 게임물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될 수 없도록 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

<(참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 비교>

- (기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게임산업법」에 따른 제재 불가능
 - (개선)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유형에 따른 확률정보, ▲매체별(게임물·홈페이지·광고) 표시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 (위반시) ①확률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②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현행>		<개선>
표시의무 대상		표시의무 대상
1.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2. 연령등급 3. 게임물내용정보	⇒	1. 게임물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 2. 연령등급 3. 게임물내용정보 4. <u>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확률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u>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발표

2024-01-03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

-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
-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감축 계획이며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함

②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

-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

③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

-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

④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

-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임을 밝힘

<축산부문 탄소중립 전략 개요>

비전	2050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 축산업 실현
목표	2018년 대비“2030 온실가스 18%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산” * 배출량 : ('18) 941만 톤 → ('30) 773(배출 전망 1,100)
추진 전략	온실가스 직접 감축 ①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②환경친화사료 보급 ③축종별 생산성 향상 타 분야 온실가스 감축 ①축분 에너지화 연계 ②축분 바이오차 활용 저투입 구조로 전환 ①스마트축산 확산 ②저탄소 사양관리 ③식품부 산물 사료 재활용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분		가축분뇨 처리	장내발효
2018 배출량	941	494(52.5%)	447(47.5%)
2030 배출전망(A)	1,100	624	476
감축수단 · 감축량(B)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220만 톤 ↓	분뇨 내 질소 저감 44만 톤 ↓	장내 메탄 발생 저감 31만 톤 ↓
	공정개선	처리 다각화	저단백사료
	▶ 퇴액비 생산개선 (50%→56)	▶ 정화 처리 확대 (13%→25) ▶ 에너지화 (1.3%→15)	▶ 돼지 · 가금 (0%→48)
	▶ 한육우 사육기간 단축, 도체중 향상	▶ 한육우 · 젖소 (0% → 78)	
	▶ 젖소 마리당 산유량 향상		
	▶ 어미돼지 마리당 출하수(MSY) 향상		
2030 배출목표 (A-B)	773	343	430

*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전략('21.12)'에서는 대체식품부문에서 6.3만톤 감축도 포함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듦, 지원은 확대>

- 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확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알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24.1월)
- ②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 ('24.1월)
- ③ **(저금리대환 확대개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①지원대상 대출 확대, ② 금융비용 경감혜택 강화 ('24.1분기중 시행예정)

* 소기업·소상공인의 7%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

- ① (기존) '22.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변경) '23.5.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 ② 일 년간 보증료 0.7%p 면제,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 경감

- ④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 가능 ('24.하반기)
- ⑤ **(팩토링 확대)**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23.12.21.)되어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24.1월중 시행령개정 예정)

*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 ⑥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 지원 ('24.2분기)
- ⑦ **(기업 회계부담 완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 개시 ('23.12월 기시행)

*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 거부시 금감원에 지정취소까지 건의 가능

<금융이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는 강화>

- ⑧ **(배당제도 개선)**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 확 ('24.1분기)
- ⑨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들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24.1월)
- ⑩ **(저축은행 비대면 금융환경 개선)**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 간편 ('24.1분기)

* [금융앱 간편모드] 고령층도 모바일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기능 중심으로 화면 구성

- ⑪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 가능 ('24.10월)

* 시행일 : ('24.10.25일) 병원, ('25.10.25일) 의원, 약국

- ⑫ **(외국인투자자 ID 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 가능 ('23.12월 기시행)
- 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제도 이루어짐 ('24.7월)
* 이용자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일정비율 콜드월렛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
- ⑭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4.9월)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 삭제, 등록면제 기준인 가맹점 수를 10개 이하에서 1개로 축소 등

<금융 규제 합리화>

- ⑮ **(대부채권 양도제한 합리화)**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개선 ('24.1월)
- ⑯ **(금융사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완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 면제 ('24.1월)
- ⑰ **(DSR 정교화)** '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24.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과거 5년 중 최고금리 - 현재금리 차'(상·하한 1.5%~3.0%)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부과
** 금융이용자의 불편, 업권별 준비상황 등 고려하여 순차시행
- ① 은행권 주담대 우선시행('24.2.26일) → '24년 중 전업권 전체대출 확대
- ②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5년부터는 100% 적용
- ⑱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 전환 ('24.1분기)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 ⑲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 도입 ('24.1월)
- ⑳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 강화 ('24.1월)
- ㉑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24.하반기)
- ㉒ **(은행 경영현황 자율공개 본격 시행)**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할 예정 ('24.2분기)
- ㉓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및 향후 일정 조회 기능 제공 ('24.상반기)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칠 예정이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올해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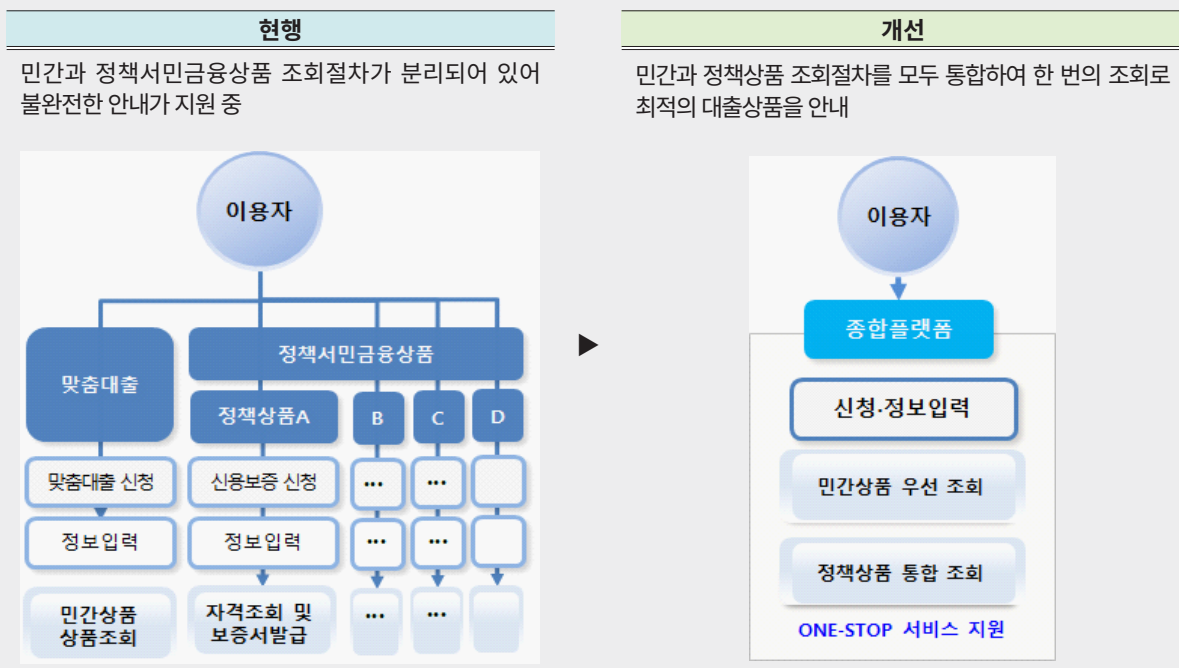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만 제공해온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모두 담은 서민금융 ‘전용’ 플랫폼임

(가칭)“서민금융 있다”로 명명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자금 수요자의 최접점에서, 수요자가 상품 이름이나 다양한 지원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간·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받고 조회하여, 상품 간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 발이며, 특히, 그동안 대면에 한정되었던 복합상담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편리하게 취업·복지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

①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 이용자가 복잡·다기한 상품 내용을 몰라도 「민간·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 →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 금융회사 대출」까지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한 번에 제공

<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전·후 비교 >



②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복합상담과 사후관리까지

- 소액생계비 대출에 한해 대면으로만 제공되었던 복합상담(취업·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서비스를 모든 상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

< 복합상담 비대면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

현행				개선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대출		직접보증	위탁보증	직접대출
비대면	×	×	×	▶	○	○	○
대면	△	×	○		○	○	○
* 대면 채널의 소액생계비대출 중심으로 지원				* 모든 채널, 모든 상품으로 확대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03 시행예정

조달통계의 대상으로 계약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조달사업과 관련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5조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7조의2 신설 등)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2025-01-03 시행예정
---------	------------------------	-----------------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그린바이오산업을 그린바이오투자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생산·판매·유통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제2조)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을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 ③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및 창업 지원 등을 규정함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④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13조)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첨단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5조 및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4 시행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그 예외사유 중 하나인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68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

이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가설 전기공사, 전체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 또는 발전소의 주설비 공사 등을 분리발주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8조)

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1-03 시행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5-01-03 시행예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며,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조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판매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의2 신설,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제6조제2항, 제6조제6항, 제10조의3 신설, 제12조의3 신설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07-03 시행예정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1조제2항제12호, 제17조제7항~제9항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1-02 시행

동의를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으로써 동의를결 이행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유 중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삭제하고,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과징금보다 정액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이 유리한 경우에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8조의2 신설, 제9조제3항제2호, 제14조제2호, 제16조의3제2항 등)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내부통제의 기본방침·전략 수립, 임직원의 직업윤리·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금융회사 임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종 관리조치를 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각종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법령 등 위반행위의 발생경위와 정도 및 그 결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3조제3항제2호, 제5조제3항 신설,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03. ~02.13.

데이터안심구역, 가치평가기관,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방식을 조정하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보완을 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데이터 산업진흥 시행계획 확정 기한 조정 (안 제3조제2항)
 -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일정을 3월 31일로 조정
-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정 방식 변경 (안 제6조제3항)
 - 전문위원회 위원장·위원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토록 변경
- ③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관련 위임규정 신설 등 (안 제12조)
 -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 및 지정·지정취소 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 ④ 가치평가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 (안 제14조제6항)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 신설
- 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세부사항 위임규정 신설 (안 제20조의3제6항)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규정 신설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tel:044-202-6285) (전화: 044-202-6285, 팩스: 044-202-6052)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03. ~01.10.
-------	---------------------------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안 제19조의9)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로 확대

② 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안 제19조의10)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전화: 02-2100-2867, 팩스: 02-2100-2879\)](tel:02-2100-2867)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1.04.
~02.1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 (안 제1조의2제2항제8호)

- 그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카드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 행위 조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
- 향후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②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 한도 관련 규제차익 해소 (안 제6조의7제5항제1호)

- 현행 법령상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가 온라인은 연회비의 100%, 오프라인은 연회비의 10%까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과 관계없이 신용카드 신규 모집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연회비의 100%까지로 동일하게 규정
- 개정 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 해소 가능

③ 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상향 (안 제7조의2제1항제3호)

- 현행 법령상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최고 한도는 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급식 지급단가 상승으로 아동급식카드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
- 이에 아동급식카드의 경우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
- 향후 선불카드 이용한도 초과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 해소 기대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의3제1항제14호)

-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

-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을 추가로 규정
- 렌탈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자금조달방법 다변화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1, 팩스: 02-2100-2933\)](tel:02-2100-2991)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2인)

2024-01-04 발의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지원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나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218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01-03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반면,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함. 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함 (안 제11조의5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6인)

2024-01-03 발의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에는 노동담당 전담 부서들이 부재하여 정책 수립과 이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이중노동시장 구조의 취약노동 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예방적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자체 노동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등 12인)

2024-01-03 발의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남

특히, 사용연료 전환의 효과성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점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통계에서도 알 수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10개 기업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8%를 배출하였는데, 배출 상위 10개 업체 중 8개가 석탄 연료를 사용한 제철소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사업장으로 나타났음

이에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3조제9항 신설 및 제42조)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2024-01-04 발의

현행 법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를 전제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월급제 시행을 유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서울시가 2022년 9월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 일반택시운수종사자 20,3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로 통칭되는 월급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대법원 또한 실제 근무형태나 운영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선고(2019. 4. 18. 선고, 2016다2451)하면서도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근무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인용(2022. 7. 14. 선고, 2022다229462)하였음

이에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9(화) 14:00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2소위	1/8(월) 11:00	- 타위법 심사
	전체회의	1/8(월) 14: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10(수) 14:00	- 가사소송법 개정 관련 공청회 - 고유법 심사
기재위	전체회의	1/8(월) 10:00	- 현안보고(기획재정부)
과방위	법안1소위	1/8(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8(월) 11:00	- 법안 의결
외통위	전체회의	1/8(월) 10:00	-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법안소위	1/9(화) 10:00	-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1/9(화) 10:00	- 현안 질의
농해수위	안전조정위	1/9(화) 10:00	- 안전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 - 법안 심사
정보위	전체회의	1/11(목) 10:00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08(월) 14:00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09(화) 09:30	제2차 더민초 비례대표 선거제도 대토론회 - 연동형과 병립형의 시나리오	더불어민주당 초 선의원 모임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0(수) 14:00	(소아과 살리기 프로젝트) 무과실 소아과 의료사고 국가지원 강화 간담회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1/10(수) 14:00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1/11(목) 10:00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신동근 · 고영인 ·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목) 14:00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박수영 의원실, 이데일리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목) 14:00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	인재근 의원실, 사단법인 윤율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목) 14:00	인슐린이 필요한 중증 당뇨병 관리체계의 선진화 방안	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실
자료집 등	1/8(월)	「팩트북」 제108호 발간 - 사이버안보	국회도서관	
	1/10(수)	「금주의 서평」 제661호 발간 - 도서명 : 못생긴 서울을 걷는다 - 저 자 : 허남설		
	1/10(수)	「World&Law」 제2024-1호 발간 - 금융교육,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1/12(금)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0(수) 14:00	「지방소멸 시대의 재정역량 강화를 위한 NARS 시리즈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1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2/27(수)	「금주의 서평」 제660호 발간 - 도서명 : 심플 라이프 - 저 자 :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	국회도서관	
	12/26(화)	「현안, 외국에선?」 제73호 발간 -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2~1.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3(수)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국제조세 분야)
1/3(수)	조세	2023년 개정세법 (기업과세 분야)
1/4(목)	조세	2023년 개정세법 (자산과세 분야)
1/4(목)	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1/5(금)	노동	2024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